

의안번호	2209294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5. 5. 20.
추계번호	25G18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6년에서 2040년까지 15년간 총 16조 6,950억원(연평균 1조 1,13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26~204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40	누적	연평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7조)	-	-26,697	-27,707	-28,648	-29,577	-30,531	-	-143,160	-28,63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7조의4)	-	-44	-45	-47	-49	-50	-	-235	-47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3조)	-	-91	-91	-91	-91	-91	-	-455	-91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 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3조의2)	-	-775	-865	-966	-1,078	-1,204	-	-4,889	-978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4조)	-	-139	-139	-139	-139	-139	-	-695	-139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6조)	-	-1,895	-1,895	-1,895	-1,895	-1,895	-	-9,475	-1,895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8조의3)	-	-6	-11	-17	-22	-28	-195	-279	-20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5년 연장(안 제60조)	-	-2	-2	-2	-2	-2	-	-10	-2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1조)	-	-4	-4	-4	-4	-4	-	-22	-4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3조)	-	-156	-312	-468	-624	-780	-2,340	-4,680	-425
수도권 밖 본사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3조의2)	-	-45	-90	-135	-180	-225	-680	-1,355	-123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40	누적	연평균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64조)	-	-21	-42	-62	-83	-104	-208	-520	-58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77조의3)	-233	-233	-233	-233	-233	-	-	-1,165	-233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 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85조의8)	-	-2	-2	-2	-2	-2	-	-10	-2
계	-233	-30,110	-31,438	-32,710	-33,980	-35,056	-3,423	-166,950	-11,13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2	안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3	안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 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4	안 제13조의2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5	안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 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6	안 제14조 (창업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 차익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7	안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의 적용 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8	안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9	안 제27조 (투융자집합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투융자집합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10	안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대도시권내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의 공장의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11	안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12	안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13	안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14	안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15	안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16	안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지·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17	안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	안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3	안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4	안 제13조의2(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	안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동 조항의 비과세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향후 양도차익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
6	안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7	안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8	안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9	안 제27조(투융자집합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 향후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
10	안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1	안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2	안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13	안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14	안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5	안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6	안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7	안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향후 위기지역 지정여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5년에 의결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
 -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
 - － 단,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토지가 양도된 해당연도에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안 제7조)
 - 향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소득세 감면액의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종합소득세 증가율 전망(2024.10.)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소득세 감면액의 증감률은 종합소득세수 증감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 관계식을 도출한 후, 종합소득세 증가율 전망을 통해 향후 소득세 감면액 추계
 - * 2016~2024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과 종합소득세의 상관계수: 0.844
 - 향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법인세 감면액의 증감률은 최근 5년('21~'25)간 연평균 증가율(3.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 －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법인세 증감과 관계없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안 제7조의4)
 - 향후 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최근 3년(2022~2024년)간 공제대상인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
 - － 동 조항에 따른 지급기한 60일 이내에 상생결제 지급금액은 2022~2024년간 연평균 3.4% 증가
 - － 단, 2025년 공제실적의 경우 2024년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증가율(2.7%)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안 제13조)
 - 향후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 동 세액공제의 최근 5년간 공제실적은 2020년 24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잠정) 64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안 제13조의2)

-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18~2024년 벤처캐피털 신규투자액 연평균 증가율(11.6%)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 내국법인의 직접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벤처캐피털을 통한 벤처 간접투자 증가와 유사한 수준에서 내국법인의 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안 제14조)

- 향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 동 과세특례의 최근 5년간 공제실적은 2019년 19억원에서 2021년 317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23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안 제16조)

- 향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4년 실적(잠정)이 유지된다고 가정
 - 2024년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실적은 1,895억원 수준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안 제18조의3)

- 조세지출 감면실적을 연단위로 환산한 후 최근 3년(2022~2024년)간 실적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은 과거 국내복귀자에 대한 누적액으로, 해당 실적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배분하여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를 산출
 - ※ 동 특례의 경우 2020년 국내로 복귀한 자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연도별 복귀자에 대한 감면액이 누적되어 감면실적이 발생

	감면액 발생 시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0년 복귀자							
2021년 복귀자							
2022년 복귀자							
2023년 복귀자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안 제60조)
 - 향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2024년 실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 최근 2년간 과세특례의 실적은 2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안 제61조)
 - 향후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 동 과세특례의 최근 5년간 공제실적은 2019년 3억원에서 2023년 7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5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 수도권 밖 공장 이전의 경우 이전지역별 감면기간을 감안하여 「조세지출예산서」 상 최근 4년(2021~2024년)의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수도권 밖 본사 이전의 경우 2024년 감면액의 잠정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은 과거 10년(7년 100% 감면, 3년 50% 감면)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

-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5년 100% + 2년 50%)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공장 또는 본사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7년 100% + 3년 50% 또는 10년 100% + 2년 50%)¹⁾은 고려하지 않음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안 제64조)
 -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감안하여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5년 전망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은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시기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됨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5년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적용된 감면실적의 합계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한 후 배분
 -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첫 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입주 후 5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안 제77조의3)
 -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24년 조세지출 실적(잠정치)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과 관련하여 협의매수·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향후 증감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2024년 실적(잠정치)이 유지된다고 가정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안 제85조의8)
 - 향후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에 따른 과세이연 효과(이자상당액)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실적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

- 이외에도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투융자집합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안 제13조의4 및 제27조, 제99조의9)
 - 벤처투자회사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감면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향후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시점 및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투융자집합기구 투자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로 구분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향후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경우, 2025년 5월 현재 동항목의 지원대상인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위기지역으로의 지정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3. 상세 추계내역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7조)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본점 소재지,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구분하여 감면하는 제도
 - 동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1992년 도입되었으며, 최근 10년간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우대,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 도입, 감면대상 확대 등의 제도변화 존재

[표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주요 연혁

개정연도	개정내용
2016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10% 확대 적용 ※ 10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 감면대상 확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임업 추가
2017	- 감면한도 설정: 1억원 - (500만원 × 고용 감소인원)
2020	- 감면대상 확대: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임대업 추가
2022	- 수도권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감면 삭제 - 알뜰주유소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 한시적 도입(2022과세연도)

-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본점 소재지,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5~30%의 감면율을 적용
 - 단, 장수 성실중소기업의 경우, 감면율의 10%(1.1배) 우대 적용

[표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

구분		도소매업 및 의료업	그 외 업종
수도권	소기업	10	20
	중기업	감면 배제	
비수도권	소기업	10	30
	중기업	5	15

- (특례실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실적은 2021년 1조 9,528억원에서 2025년 2조 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
 -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2021년 9,995억원에서 2025년 1조 3,998억원으로, 법인세는 2021년 9,534억원에서 2025년 1조 1,002억원으로 증가할 전망

[표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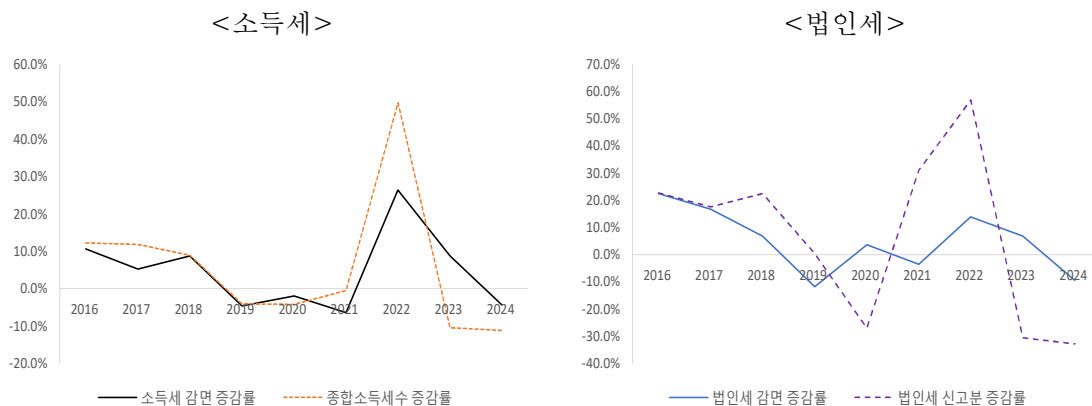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잠정)	2025(전망)
감면실적	22,165	23,489	25,336	23,639	25,000
- 소득세	9,995	12,632	13,738	13,133	13,998
- 법인세	9,534	10,858	11,598	10,506	11,002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2) 추계방법

- (감면실적 증감률과 세수증감률간 상관관계) 세목별 감면실적 중 소득세 감면실적의 증감률은 종합소득세수 증감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2016~2024년간 소득세 감면실적 증감률과 종합소득세수 증감률간 상관관계수는 0.844 수준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반면, 동 기간 법인세 감면실적 증감률과 법인세 신고분 증감률간 상관관계수는 0.454 수준으로 높지 않게 나타남
 - 2020년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국면 하강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한데 반해, 동 기간 법인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실적은 대체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세수와 감면실적의 추세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 법인세 감면실적과 법인세 신고분간 상관관계수: ('16~'19년) 0.871, ('20~'24년) 0.458

[그림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증감률과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분 증감률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16~2024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소득세 감면액의 증감률과 종합소득세수 증감률의 관계식을 회귀분석하여 추정하면, 종합소득세수 1% 증가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득세 감면액은 0.416% 증가
 - 회귀식의 종속변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의 증감률, 설명변수는 종합소득세수 증감률 및 연도더미(2022년=1, 그 외=0)로 구성
 - 추정결과,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
- $$\% \Delta \text{감면액}_t = 0.001 + 0.416^{**} \% \Delta \text{종합소득세수}_t + 0.209^{***} D_t + e_t$$
- (0.046) (2.657) (8.628)
- 단, ()안은 t값이며, **는 5% 유의수준에서, ***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함

-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소득세) 소득세 감면액 증감률에 대한 회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소득세 감면액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종합소득세수 전망치(2024.10.)를 바탕으로 향후 소득세 감면액 증감률을 추정하면,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4,878억원에서 2031년 1조 6,89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

[표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소득세 감면액 추정

(단위: %,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종합소득세수 증감률 전망치(A)	7.4	9.2	7.5	6.8	6.7
소득세 감면액 증감률 전망치 ($B=0.001+0.416\times A$)	3.2	3.9	3.2	2.9	2.9
소득세 세수효과 추정치 ($C=C(\text{전년도})\times[1+B]$)	14,878	15,457	15,951	16,417	16,891

-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법인세)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법인세 감면액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법인세 감면액이 최근 5년(2021~2025년)간 연평균 증가율(3.6%)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면,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1,819억원에서 2031년 1조 3,64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

[표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법인세 감면액 추정

(단위: %,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법인세 세수효과 추정치	11,819	12,250	12,697	13,160	13,640

(3) 추계결과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 2조 6,697억원, 2031년 3조 531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4조 3,160억원(연평균 2조 8,6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소득세 및 법인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7조)	-26,697	-27,707	-28,647	-29,577	-30,531	-143,160	-28,632
- 소득세	-14,878	-15,457	-15,951	-16,417	-16,891	-79,594	-15,919
- 법인세	-11,819	-12,250	-12,697	-13,160	-13,640	-63,566	-12,713

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7조의4)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기업간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

- 동 제도의 공제대상, 공제율 및 적용기한은 다음과 같음
 - 공제대상: 상생결제 제도를 통하여 다른 중소·중견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 ※ 단,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의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아야 함
 - 공제율: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에 따라 0.15~0.5%
 - ※ 지급기한 15일 이내 0.5%, 16~30일 0.3%, 31~60일 0.15%
 -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의 10%
 - 적용기한: 2025.12.31.
- 동 제도는 2016년 도입된 이래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율 및 공제대상이 확대

[표 8]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7조의4)의 주요 연혁

시행연도	주요 개정내용
2016년	· 제도 도입 - 공제대상: 상생결제 제도를 통하여 다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 공제율: 지급기한 15일 이내 0.2%, 15~60일: 0.1%
2018년	· 공제대상 확대: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2022년	· 공제율 세분화 및 인상: - (기준) 지급기한 15일 이내 0.2%, 15~60일: 0.1% → (개정) 지급기한 15일 이내 0.5%, 15~30일 0.3%, 31~60일: 0.15% · 공제요건 완화 - 구매대금 중 현금성 결제 비중 관련 요건 삭제

□ (감면실적)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근 5년(2020~2024년) 간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20년 8억원에서 2024년(잠정) 40억원으로 증가
 - 실적의 대부분은 법인세 공제실적이며, 소득세 공제실적은 연평균 1억원 수준

[표 9]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공제실적	8	12	21	39	40
- 소득세	1	1	1	1	1
- 법인세	7	11	20	38	39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에서 최근 3년(2022~2024년)간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연평균 증가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지급기한 60일 이내 상생결제 지급금액은 2022년 17.8조원에서 2024년 18.4조원으로 연평균 3.4% 수준으로 증가

[표 10] 상생결제 지급금액 실적: 지급기한 60일 이내, 2022~2024년

(단위: 조원, %)

지급금액 구분	2022	2023	2024
지급기한 60일 이내	17.8 (7.3)	17.9 (0.4)	18.4 (2.7)
- 15일 이내	6.5	7.0	7.0
- 16~30일	2.0	2.0	2.0
- 31~60일	9.2	8.8	9.3

주: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최근 3년간 상생결제 지급금액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3.4%)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 단, 2025년의 경우 2024년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증가율인 2.7%와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표 11] 개정안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조원, %)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공제액 추정치	44	45	47	49	50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44억 원, 2031년 50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235억원(연평균 4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7조의4)	-44	-45	-47	-49	-50	-235	-47

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3조)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등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

○ 다음의 출자로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벤처투자회사 등*이 해당 출자로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
 -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 등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개정안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로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 (감면실적)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최근 5년 (2020~2024년)간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제도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는 2020년 24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잠정) 64억원으로 감소

-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 자산시장 호황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이 주식 및 출자지분 매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하여 비과세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표 1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추이: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연평균 (‘20~’24년)
비과세	24	41	120	205	64	91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동 제도에 따른 비과세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향후 법인세 세수 감소효과는 최근 5년(2020~2024년)의 연평균 비과세 규모인 91억 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표 14]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세수 감소효과	91	91	91	91	91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91억 원, 2031년 91억 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455억 원(연평균 9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3조)	-91	-91	-91	-91	-91	-455	-91

라.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3조의2)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 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 내국법인
- 출자(투자) 대상
 - ①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②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공제세액: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상 법인세 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감면은 2018년부터 발생하였으며, 벤처투자 확대에 따라 감면실적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16]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실적: 2018~2024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감면실적	135	172	260	335	676	652	557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벤처기업 신규투자 현황) 벤처캐피털을 통한 벤처기업 신규투자액은 3.4조원에서 2024년 6.6조원으로 증가

- 2018~2024년 벤처기업캐피털 신규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1.6%
 - 2021~2022년 신규투자액 급증은 자산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

[표 17] 벤처기업캐피털 신규투자 현황: 2018~2024년

(단위: 개소,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8~'24 연평균 증가율
투자받은 기업수	1,399	1,608	2,130	2,438	2,474	2,281	2,494	10.1
투자액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53,977	66,315	11.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2024년 잠정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감면실적이 매년 11.6%씩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세액공제액 전망
 - 내국법인의 직접 투자액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간접투자 증가율(11.6%)을 적용하여 향후 공제액 규모를 추계
 -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2031년에 발생

[표 18]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전망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775	865	966	1,078	1,204

(3) 추계결과

-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775억원, 2031년 1,204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889억원(연평균 9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계	연평균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13조의2)	-775	-865	-966	-1,078	-1,204	-4,889	-978

마.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4조)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투자자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및 지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 공제대상: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창업기획자 등에 출자한 투자자, 벤처투자조합 등
 - 공제내용: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조세지출 실적)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19년 19억원에서, 2020년 212억원, 2021년 317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2년에는 124억원, 2023년에는 23억원으로 감소

[표 20]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평균
조세지출액	19	212	317	124	23	139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조세지출 실적의 평균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
 - 창업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지분 양도차익의 실현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조세지출 실적치의 변동성이 큼에 따라 최근 5년 평균치가 향후 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

(3) 추계결과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139억원, 2031년 139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95억원(연평균

13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계	연평균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4조)	-139	-139	-139	-139	-139	-695	-139

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6조)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거주자의 투자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내용

- 공제대상: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
- 공제율: (벤처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에 투자한 경우) 10%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0~100%
※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50%, 5천만원 초과 3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조세지출 실적)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4년 1,895억원으로 2021년 이후 3년간 연평균 61.8% 증가

- 2018년 이후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연도별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남
 - 2022년 조세지출 실적은 전년 대비 66.0% 증가한 반면, 2024년은 전년대비 0.5% 감소

[표 2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

	2020 (실적)	2021 (실적)	2022 (실적)	2023 (실적)	2024 (전망)	2021~2024 연평균 증가율
조세지출액 (증가율)	891 (50.3)	1,075 (20.7)	1,785 (66.0)	1,905 (6.7)	1,895 (-0.5)	- (20.8)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의 2024년 조세지출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향후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투자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연도별 조세지출 실적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므로, 2024년 조세지출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

(3) 추계결과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1,895억원, 2031년 1,895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475억원(연평균 1,8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계	연평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6조)	-1,895	-1,895	-1,895	-1,895	-1,895	-9,475	-1,895

사.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8조의3)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국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의 50%를 10년간 감면함
 - 대상자: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국내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²⁾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받는 자

- 감면내용: 취업일부터 10년* 동안 소득세 50% 세액감면

* 2022년 개정을 통해 감면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기존 복귀자에게도 적용)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동 특례는 2020년 국내복귀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후,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2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실적: 2019~2024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감면실적	신설	0	17	11	15	25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 (추계방법) 감면실적을 연단위로 환산 후, 2022~2024년 실적 평균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 추정

- 각 연도별 감면실적은 과거 국내복귀자에 대한 감면액이 누적된 금액으로, 이를 연단위로 환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표 25]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실적 연단위 환산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A)	17	11	15	25
2020년 복귀자				
2021년 복귀자				
2022년 복귀자				
2023년 복귀자				
연단위 환산액 (A/누적연도□□)	17	5.5	5	6.25

- 2022년~2024년 연단위 환산액의 평균(5.6억원)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산출

[표 26]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 발생

	2027	2028	2029	...	2038	2039	2040
2026년 복귀자				...			
2027년 복귀자							
2028년 복귀자							
2029년 복귀자							
2030년 복귀자							

(3) 추계결과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
세수는 2027년 5.6억원, 2040년 5.6억원 등 2027년부터 2040년까지
14년간 총 279억원(연평균 2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8조의3)	-5.6	-11.2	-16.8	-22.3	-27.9	-27.9	-27.9	-27.9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누적	연평균
	-27.9	-27.9	-22.3	-16.8	-11.2	-5.6	-279	-20

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0조)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대도시권 내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 이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

- 특례대상: 대도시권 내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 － 단,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
- 특례내용: 공장의 대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허용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실적) 최근 5년(2020~2024년)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1년 이전까지는 0.1~0.2조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이후 증가하여 2024년 2억원 수준
 - －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표 28]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조세지출 실적	0.2	0.1	1.0	2.0	2.0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2) 추계방법

□ 향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년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

- 최근 2년간 과세특례의 실적은 2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추계결과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2억원, 2031년 2억원 등 5년간 10억원(연평균 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계	연평균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5년 연장(안 제60조)	-2	-2	-2	-2	-2	-10	-2

자.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1조)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 본사 등의 이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

- 특례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사 및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 단, 본사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전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
- 특례내용: 본사 및 주사무소의 대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허용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실적) 최근 5년(2020~2024년)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과세특례의 실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4억원 수준으로 발생
 - 동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0년 3억원에서 2023년 7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5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표 30]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연평균 (‘20~’24년)
조세지출 실적	3	2	5	7	5	4.4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2) 추계방법

- 향후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20~2024년)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동 과세특례의 실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4억원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며,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3) 추계결과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4.4억원, 2031년 4.4억원 등 5년간 22.0억원(연평균 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계	연평균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5년 연장(안 제61조)	-4.4	-4.4	-4.4	-4.4	-4.4	-22.0	-4.4

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3조)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소득세 감면

- 감면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중소기업은 2년) 계속하여 공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은 2020년까지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었으나, 2021년부터 일반 기업까지 확대
 -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됨
- 감면내용: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동안 법인·소득세 감면
 - 수도권 내(중소기업한정),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대도시: 5년 100% + 2년 50%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기타지역 : 7년 100% + 3년 50%
 -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 단, 2022년까지는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
→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상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부터 일반기업까지 확대되었으므로 2021년 이후의 실적을 살펴봄
- 2021~2024년(잠정) 법인세 감면액 평균: 1,092억원
- 2021~2024년(잠정) 소득세 감면액 평균: 240억원

[표 32]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실적: 2021~2024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잠정) ¹⁾
계	2,052	1,192	1,279	805
법인세	1,799	928	1,029	610
소득세	253	264	249	195

주: 1)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최근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액의 평균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각각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

○ (법인세) 1년 단위 환산액: 50% 감면액 64억원* + 100% 감면액 128억원**

* 64억원 = 1,092억원 ÷ 17 (7년 × 2 + 3년)

** 128억원 = 64억원 × 2

–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10년(7년 100% 감면, 3년 50% 감면)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

○ (소득세) 1년 단위 환산액: 50% 감면액 14억원* + 100% 감면액 28억원**

* 14억원 = 240억원 ÷ 17 (7년 × 2 + 3년)

** 28억원 = 14억원 × 2

○ 공장을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5년 100% + 2년 50%)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공장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7년 100% + 3년 50% 또는 10년 100% + 2년 50%)³⁾은 고려하지 않음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

[표 33] 연도별 법인·소득세 감면 예상액: 2027~2037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6년 이전법인	-156	-156	-156	-156	-156	-78
2027년 이전법인		-156	-156	-156	-156	-156
2028년 이전법인			-156	-156	-156	-156
2029년 이전법인				-156	-156	-156
2030년 이전법인					-156	-156
계	-156	-312	-468	-624	-780	-702

구분	2033	2034	2035	2036	2037	누적	연평균
2026년 이전법인	-78						
2027년 이전법인	-78	-78					
2028년 이전법인	-156	-78	-78				
2029년 이전법인	-156	-156	-78	-78			
2030년 이전법인	-156	-156	-156	-78	-78		
계	-624	-468	-312	-156	-78	-4,680	-425

(3) 추계결과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2027년 156억원, 2037년 78억원 등 2027년에서 2037년까지 11년간 총 4,680억원(연평균 42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세액감면이 7년간 이루어짐에 따라 2030년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7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

[표 3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소득세, 2027~2037년
(단위: 억원)

	'27	'28	'29	'30	'31	'32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3조)	-156	-312	-468	-624	-780	-702	
	'33	'34	'35	'36	'37	합계	연평균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3조)	-624	-468	-312	-156	-78	-4,680	-425

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63조의2)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은 2020년까지 공장·본사 이전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2021년부터 본사 이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 감면내용: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법인세 감면
 -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대도시: 5년 100% + 2년 50%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기타지역 : 7년 100% + 3년 50%
 -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 단, 2022년까지는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본사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 (감면실적)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실적은 2021년 기준 3,032억원, 2024년(잠정치) 38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21년부터 ‘공장·본사 이전’에서 ‘본사 이전’으로 조정되었으므로 2021

년 이후의 실적을 살펴봄

-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면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임

[표 35]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1~2024년

(단위: 억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잠정) ¹⁾
감면액	3,032	2,993	727	383

주: 1)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감면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⁴⁾이므로 2024년 잠정치를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

- 1년 단위 환산액: 50% 감면액 23억원* + 100% 감면액 45억원**

* 23억원 = 383억원 ÷ 17 (7년 × 2 + 3년)

** 45억원 = 23억원 × 2

- 본사를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5년 100% + 2년 50%)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본사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7년 100% + 3년 50% 또는 10년 100% + 2년 50%)⁵⁾은 고려하지 않음

4)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5년 감면실적의 전망치 역시 401억원으로 2024년 잠정치와 유사한 수준이므로 2024년 잠정치를 기준으로 추계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

[표 36] 연도별 법인세 감면 예상액: 2027~2037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6년 이전법인	-45	-45	-45	-45	-45	-23
2027년 이전법인		-45	-45	-45	-45	-45
2028년 이전법인			-45	-45	-45	-45
2029년 이전법인				-45	-45	-45
2030년 이전법인					-45	-45
계	-45	-90	-135	-180	-225	-203

구분	2033	2034	2035	2036	2037	누적	연평균
2026년 이전법인	-23						
2027년 이전법인	-23	-23					
2028년 이전법인	-45	-23	-23				
2029년 이전법인	-45	-45	-23	-23			
2030년 이전법인	-45	-45	-45	-23	-23		
계	-181	-136	-91	-46	-23	-1,355	-123

(3) 추계결과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45억원, 2037년 23억원 등 2027년에서 2037년까지 11년간 총 1,355억원(연평균 1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세액감면이 7년간 이루어짐에 따라 2030년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7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

[표 3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37년

(단위: 억원)

	'27	'28	'29	'30	'31	'3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3조의2)	-45	-90	-135	-180	-225	-203	
	'33	'34	'35	'36	'37	합계	연평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3조의2)	-181	-136	-91	-46	-23	-1,355	-123

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4조)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운영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 (개정연혁)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0.12.29. 개정된 규정으로, 농공단지⁶⁾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⁷⁾에 입주한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감면기한 및 감면율, 고용과 연계된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2018.12.24. 일부개정: 5년간 법인세 등에 대한 50% 감면율,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감면 한도와 상시근로자수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신설
- 2021.12.28. 일부개정: 감면대상 사업장의 폐업 또는 법인 해산 등의 경우에는 추정대상에서 제외

○ (현행규정)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

- 감면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인

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명 미만인 시·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나주·나주혁신·김제지평선·북평·담양·동함평·세풍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강진산업단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총 13개 지역을 말한다.

②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 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감면한도: ①+② 또는 ①+③

① 투자누계액의 50% ② 상시근로자수×1,500만 원 ③ 청년상시근로자수 등×2,000만 원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8.12.31.

□ (감면실적)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0년 43억 원에서 2024년 99.6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표 38]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및 전망: 2020~2025년

(단위: 억 원)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2025(전망)
법인세	30.4	38.9	49.2	45.9	98	102
소득세	12.6	10.6	4.9	4.0	1.6 ¹⁾	2
합계	43	49.5	54.1	49.9	99.6	104

주: 1) 2024년 소득세 감면실적

자료: 국세통계포털,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현황」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고현황」, 각 신고연도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5년 감면액 전망치를 바탕으로 신규 입주 기업으로 인한 감면 발생액을 가정한 후,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은 2025년 감면액(104억 원)의 20% 수준인 20.8억 원으로 가정

- 2025년 감면실적 전망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입주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기 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된 감면실적의 합계이므로 이 중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은 감면액의 1/5인 20.8억 원으로 가정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향후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추계

- 신고기준에 따라 t년도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세액감면 세수효과는 t+1~t+5년에 걸쳐 발생

[표 39]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액 추계: 2027~2035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1	2033	2034	2035
'26년 입주기업	20.8	20.8	20.8	20.8	20.8				
'27년 입주기업		20.8	20.8	20.8	20.8	20.8			
'28년 입주기업			20.8	20.8	20.8	20.8	20.8		
'29년 입주기업				20.8	20.8	20.8	20.8	20.8	
'30년 입주기업					20.8	20.8	20.8	20.8	20.8
감면 추계액	20.8	41.6	62.4	83.2	104	83.2	62.4	41.6	20.8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20.8억 원, 2035년 20.8억 원 등 2027년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520.0억 원(연평균 57.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5년까지 발생

[표 4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소득세, 2027~2035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기한 5년 연장(안 제64조)	-20.8	-41.6	-62.4	-83.2	-104.0	-8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기한 5년 연장(안 제64조)	-62.4	-41.6	-20.8	-520.0	-57.8	

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5년 연장(안 제77조의3)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매수청구·협의매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상소득: 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해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감면율: 토지 취득일에 따라 40% 또는 25%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 40%
 -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25%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동 특례의 감면실적은 2019년 46억원, 2024년(잠정치) 233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4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 2019~2024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감면실적	46	56	112	167	192	233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추계방법) 2023년 감면실적 잠정치(233억원)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정

- 최근까지 조세지출 실적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과 관련하여 향후 협의매수·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추이를 예측하기 곤란

(3) 추계결과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233억원, 2030년 233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65억원(연평균 2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77조의3)	-233	-233	-233	-233	-233	-1,165	-233

하.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85조의8)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이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
 - 특례대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동일 산업단지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기업
 - 특례내용: 공장의 대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허용
 -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소득세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허용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실적) 최근 5년(2020~2024년)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치는 다음과 같음
 - 동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1년 이전까지는 0.1~0.2조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이후 증가하여 2024년 2억원 수준
 -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감면실적은 전액 법인세에서 발생

[표 43]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조세지출 실적	0.2	0.1	1.0	1.0	2.0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2) 추계방법

- 향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2024년 실적(2억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동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2022년 이후 1억원, 2024년 2억원으로 증가 하였으며, 변동이 크지 않아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3) 추계결과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2억원, 2031년 2억원 등 5년간 10억원(연평균 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계	연평균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85조의8)	-2	-2	-2	-2	-2	-10	-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세제분석2과	신미정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